

 보건복지부	보 도 자 료 7월 7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			
배 포 일	2020. 7. 6. / (총 4매)			
보건복지부	과 장	임 혜 성	전 화	044-202-3490
요양보험제도과	담 당 자	박 성 희		044-202-3495
국민건강보험공단	부 장	문 정 욱		033-736-3804
인정관리부	담 당 자	김 윤 경		033-736-384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7.7)

-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7월 7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.
 - 이는 1~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.79년에서 2.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,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.
-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(부칙 제2조)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.

-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,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.

< 참고 :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>

	최초인정 시	갱신 시		등급변경 시
		동일등급 판정	다른등급 판정	
기 존	1년	등급에 따라 2~4년	1년	1년
변경 후	2년	전과 동일	2년	2년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’를 발송할 예정이다.

-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 밝혔다.

< 붙임 >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

< 별첨 >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별첨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

1

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?

- ☐ 아닙니다.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’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택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- ☐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(유효기간 연장 안내)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(1577-1000번)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.
- 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(유효기간 연장 안내)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‘장기요양인정서’와 ‘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’의 역할을 하므로,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. 혹시라도 (재)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?

- ☐ 네.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.
- ☐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 (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)는 없으며,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☐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,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(☎1577-1000)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